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2023. 6. 2

이규성

CONTENTS

Ⅰ.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를 주목하는 이유

Ⅱ. 미국의 사적연금 제도 현황

1. 미국의 사적연금 체계
2. 미국 사적연금의 2가지 세제 방식

Ⅲ. 미국의 사적연금 강화 관련 주요 이슈

1.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
2.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3. SECURE 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Ⅳ. 시사점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요 약 >

◉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특히 사적연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이 미미한 것이 사적연금 역할 강화와 관련한 과제로 인식되며,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음.

◉ 미국은 1) 기업연금 가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2)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SECURE 법) 개정을 2022년에 완료했으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

- 미국 내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한 기업연금 의무도입을 법제화
-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의 기업연금 기여금(적립금) 증액 프로그램의 한도 확대
-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 운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크레딧(환급금) 확대

②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 연금 가입자가 고유여건에 맞춰 연금 납입, 적립, 인출 등의 주요 과세시점을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연금의 세제방식 적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
- 연금 인출(중도인출 및 최소인출 관련) 및 종신연금계약 관련 제한 완화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 보강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제도처럼 연금 수령시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산의 연금化 유인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내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무 중인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미미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 및 지원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Ⅰ.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를 주목하는 이유

◉ **미국의 연금체계에서 보장받는 노후소득은 다른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기업연금 등으로 뒷받침되는 사적연금 제도 및 그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임.**

- 미국의 연금체계는 기초보장제도 및 공적연금 위에 구성된 기업연금(401(k) 등)과 개인연금(IRA) 등의 사적연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연금을 적립하며, 개인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적립해 연금자산을 마련함.

  • 미국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 각각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과 비교됨.

〈미국의 연금체계〉

◎ 기초보장제도(0층): 보충소득보장(SSI)(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

◎ 공적연금(1층): 노령·유족·장애인(OASDI)(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 기업연금(2층): DB형 및 DC형(401(k), 403(b), SEP IRA 등 사업장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른 제도 적용)(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해당)

◎ 개인연금(3층): IRA(우리나라의 IRP, 연금저축 등에 해당)

※ 사적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OECD에 따르면, 국가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의 경우 나라마다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도표 1〉 주요국 연금제도별 소득대체율*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공적연금	39.2%	21.6%	38.8%	41.5%	41.3%	32.4%	31.2%
사적연금	42.1%	27.4%	24.5%	14.1%	12.0%	23.1%	19.6%**
계	81.3%	49.0%	63.3%	55.6%	53.3%	55.4%	50.8%

*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 한국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임(2019년 고용노동부 용역자료 참고).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21

- 미국에서 사적연금의 보장기능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연금의 역할이 각종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충실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 및 유지를 돕기 위한 자동가입 제도, 사용자 및 근로자의 매칭기여금 자동증액 프로그램,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 **이처럼 안정된 보장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미국은 최근 관련 법(SECURE 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인데, 이는 1) 기업연금 가입을 활성화해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 연금 세제조건 등과 관련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임.**

-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법은 미국 사적연금 제도를 관할하기 위해 2019년에 만들어진 연방법으로, 2022년 개정을 통해 특히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1) 미국 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도입 법제화
2) 사용자 및 가입자(근로자)의 기업연금 기여금 증액 프로그램의 한도 확대
3) 세제혜택 적용 대상 연금 운영 사업장 기준의 완화 및 세제혜택 크레딧 확대
4) 연금 가입자가 고유여건에 맞춰 연금 과세시점(납입, 적립, 인출 시점에서의 과세)을 정할 수 있도록 연금의 세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의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통계청의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적연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사업장 도입률은 27.1%(2021년 기준)에 그쳐 미미한 편이며, 근로자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도입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 퇴직연금의 가입률 부진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관련한 주요 과제로 인식되며,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됨.

◉ **본고에서는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 움직임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제도 개선 및 보강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미국의 사적연금 제도 현황

1. 미국의 사적연금 체계

◉ 미국의 사적연금은 크게 401(k)가 중심이 되는 기업연금과 IRA로 대표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기업연금의 경우 세부 연금계좌마다 가입자의 납입한도 및 사용자의 기여조건이 조금씩 다름.

- 미국의 기업연금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전 사업장 대상의 401(k)를 비롯해 Solo 401(k)(1인 사업장 대상), SEP IRA(소규모 사업장 대상), Simple 401(k) 및 Simple IRA(1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등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납부하는 매칭기여가 주된 형태이며, 각각의 기업연금 계좌별 연간 납입한도는 66,000 달러(50세 이상은 73,500 달러)로 동일하지만 가입자 본인의 납입한도와 사용자의 기여조건은 차이가 있음(<도표2> 참조).

  • 예를 들어, Simple 401(k) 및 Simple IRA는 다른 기업연금 계좌에 비해 가입자의 납입한도가 낮으며, SEP IRA는 중장년에서의 연금 추가 기여가 불가능하고, 401(k)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동일 기여율로 납부하도록 하는 '종업원간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도표 2〉 미국 기업연금(퇴직연금)의 대상 및 가입자 납입한도

구 분		대 상	가입자 납입한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DB형 기업연금		모든 사업장	$22,500	$30,000
DC형 기업연금	Solo 401(k)	1인 사업장	$22,500	$30,000
	SEP IRA	소규모 사업장	$22,500	
	Simple 401(k) / Simple IRA	100인 이하 사업장	$15,500	$19,000
	401(k)	모든 사업장	$22,500	$30,000
개인연금	IRA	개인	$6,500	$7,500

자료: 미국 연방국세청(IRS)

2. 미국 사적연금의 2가지 세제 방식

◉ 미국의 경우 사적연금은 인출시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다가 인출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Traditional 방식(EET형)과 세금을 먼저 떼고 납입한 후 운용 및 인출 단계에서는 비과세되는 Roth 방식(TEE형) 등 2가지로 운영됨(<도표 3>참조).

〈도표 3〉 미국 사적연금의 세제적용 방식

구 분	연금운영 단계		
	납입	운용	인출
Traditional 방식 (EET형)	면제(Exempt)	면제(Exempt)	과세(Taxed)
	납입 시점 소득세율 부담 클 경우 유리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세제적용 방식과 동일)		
Roth* 방식 (TEE형)	과세(Taxed)	면제(Exempt)	면제(Exempt)
	형성된 연금 자산이 많아 연금 인출 금액이 많을 경우 유리		

* Roth IRA은 1997년 세금 삭감 법안(Tax Payers Relief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법안 발의자인 윌리엄 로스(William Roth) 상원의원 이름을 따 명명하였음.

◉ 사적연금은 Traditional 방식과 Roth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Traditional 방식이 Roth 방식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편임.

- IRA의 경우를 보면 2021년말 기준으로 Traditional IRA의 적립금 규모가 11.8조 달러이며, Roth IRA의 적립금 규모는 1.3조 달러로 Traditional IRA에 비해 미미함.

- Traditional 방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Traditional 방식 기업연금에서만 사용자의 기여금 납부가 허용됐고, Traditional 방식은 Roth 방식과는 달리 소득조건에 따른 가입제한이 없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Roth 방식은 연금수령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임.

- 2021년말 기준 미국 가구의 21%가 Roth IR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Traditional IRA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28.2%)에 크게 뒤쳐지지는 않음.

-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수령 시기에 적용받게 되는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될 때, 또는 최소인출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수단으로써 Roth IRA가 유용할 수 있음.

(* 최소인출의무(RMD)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 제도로, 2023년 현재 73세가 된 이듬해부터 매년 일정액 이상 인출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며, 인출금액이 최소인출의무 금액에 미달할 경우 2022년까지는 미달한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였음.)

〈도표 4〉 미국 사적연금 세제적용 방식의 주요 내용

구 분		Traditional 방식(EET형)	Roth 방식(TEE형)
가입기준(소득)		제한없음	싱글: $153,000 미만
			부부: $228,000 미만
연금 개시 연령		59.5세	
세금납부	납입단계	비과세(소득공제)	과세
	운용단계	비과세	비과세
	인출단계	과세	비과세
최소인출의무(RMD)		적용	비적용

〈미국의 사적연금 적립금 현황〉

◎ 2021년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사적연금별 비중을 보면 IRA(35%), 확정급여형 기업연금(31%), 확정기여형 기업연금(28%) 순이며, 최근 20여년 동안 연금자산 규모가 IRA와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21년간 사적연금 적립금의 성장률은 6.0%이며, 이 가운데 IRA(8.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6.4%↑)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IRA와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많은 기업들이 확정기여형 연금인 401(k)*를 기업연금으로 선택하고 있고, 기업연금에서 축적된 연금자산이 IRA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임.

(* 401(k) 적립금은 200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연평균 7.8% 성장)

〈미국의 사적연금별 적립금 추이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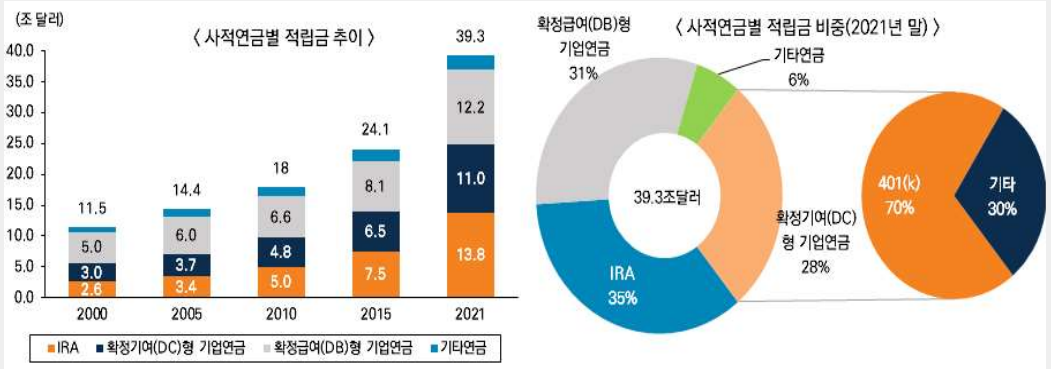

자료: ICI

Ⅲ. 미국의 사적연금 강화 관련 주요 이슈

◉ 미국 의회는 사적연금 제도와 관련한 법적 규정인 SECURE 법을 2022년에 개정하여, 기업연금 도입 확대 및 활성화를 발판으로 한 사적연금의 보장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SECURE 법은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를 관할하는 연방법으로, 2019년에 신설되었음.

- 신설 후 3년만에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1) 근로자의 직장으로부터 기업연금의 보급 및 가입을 활성화하여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 세제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연금 계좌에 대한 가입 및 선택 권한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입자가 고유 여건에 맞게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1.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국 내 거의 전 사업장에 대해 기업연금 의무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기업연금 기여금 적립 한도를 상향조정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25년부터 근무인원 10인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3년 이상 경과된 모든 영리사업장은 기업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가입자의 매칭기여율 최대 한도를 15%까지 상향조정하고 최초 기여율(3%)에서 매년 1% 포인트씩 높여나가도록 하였음.

• 기존의 기업연금 가입은 사용자와 가입 당사자인 근로자간 합의된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됐으며,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의 DC형이 새로운 직장의 DC형으로 자동이전되도록 하는 자동가입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음.

• SECURE 법 개정 이전의 매칭기여 자동증액 프로그램은 최소 기여율 3%에서 시작하여, 매년마다 1% 포인트씩 높여 최대 10%까지 기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대 기여율을 15%까지로 상향조정함.

◉ 기업연금에 기여금을 납입 중인 사업장의 세제혜택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연금지출 부담을 완화해줌.

– 세제혜택은 종전에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혜택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음.

•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레딧 방식(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연간 1,000달러 한도이며, 1~2년차는 사용자 기여금의 100%, 3년차 75%, 4년차 50%, 5년차 25% 등 5년간 단계적으로 크레딧이 제공됨.

– 다만, 2027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기업연금 기여금을 연간 최대 2,000달러 한도에서 직접 보조해주는 형태로 전환될 예정임.

◉ **또한 임시직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업연금 가입기준의 하한을 종전의 3년 연속 1,000시간 근로에서 2년 연속 500시간 근로로 완화함으로써 임시직 혹은 경력이 짧은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2.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연금 수령시 비과세되는 Roth 방식 기업연금의 가입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써, 모든 기업연금에 TEE형인 Roth 방식 도입을 허용하고, Roth 방식 기업연금에도 사용자가 기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SECURE 법 개정 전에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연금인 SEP IRA과 Simple 401(k) 및 Simple IRA에는 Traditional 방식만 허용되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연금에서 Roth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종전 Roth 방식 기업연금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사용자 기여를 허용함으로써, Roth 방식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근로자 니즈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음.

◉ **세제와 관련한 선택 여건을 조성한 것 이외에 연금 인출 및 종신연금계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으로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연금의 중도인출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한도 내 인출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가입자가 보다 유연하게 연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였음.

• 2024년부터는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할 때 비상저축계좌(Emergency savings account)를 이용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Penalty(벌금)을 내지 않고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연금 수령시 최소인출의무 조건(RMD)은 적용 개시 연령을 종전보다 상향하고, 최소인출 미이행 벌금은 인출 미달액의 25%로 더 낮춤으로써 가입자가 고령 전·후반 연금 인출 설계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음.

– 적격종신연금계약(QLACs)은 전체 연금자산에서의 구매한도를 25%에서 100%(가입금액 20만 달러 한도)까지로 늘려 종신연금계약의 가입여건을 자유롭게 하였음.

3. SECURE 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미국의 기업연금 가입률은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던 2006년 당시 62%에서 2021년 82%까지 상승하며,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주도해 왔음.

◉ 여기서 한발 더 나가 SECURE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연금 의무도입, 연금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장 범위의 확대 및 세제혜택 한도 확대 등 회사에게 기업연금 도입 및 운영의 유인을 다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 제고 및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 매칭기여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자산 적립 수준 향상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금 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Roth 방식 연금의 가입 자유화 및 연금 기여 강화에 따라 향후에는 Roth 방식 기업연금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더 각광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불할 연금소득세율이 현재 지불하는 근로소득세율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연금 수령시 비과세(TEE형)되는 Roth 방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임.

〈도표 5〉 SECURE 법안(2022년)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제도	법개정 이전	법개정 이후	기대효과
기업연금 자동가입제도	이직자의 연금이전 승계에 적용	사업장의 기업연금 도입 의무화 → 신규 근로자의 자동가입	연금 가입률 제고
기업연금 도입 사업장 세제혜택(크레딧)	5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최초 1년간 세제혜택	1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5년간 세제혜택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조건	3년 연속 1,000시간 근로	2년 연속 500시간 근로	
기업연금의 매칭기여 증액 프로그램	최초 기여율(3%)에서 최대 10%까지 매년 기여금 인상	최초 기여율(3%)에서 최대 15%까지 매년 기여금 인상	근로자의 노후자산 축적효과 제고
Roth 방식 기업연금의 사용자 기여	불가능	허용	연금계좌 관리의 유연성 제고
기업연금 내 비상금 인출계정 설정	-	비상금 계정에서 연간 1,000달러 한도로 벌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최소인출의무	72세부터 적용, 미이행벌금(인출미달액의 50%)	75세부터 적용(2033년), 미이행벌금(인출미달액의 50%)	
종신계약 구매한도	구매한도는 연금자산의 25%	연금자산의 100% (20만 달러 한도)	

자료: Senate Finance Committee(2022), “SECURE 2.0 Act of 2022”을 바탕으로 정리

Ⅳ. 시사점

◉ 기업연금(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한 미국 사례를 통해 사적연금의 보강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세금 후납형 방식의 연금 뿐 아니라 세금 선납형 방식의 연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함으로써, 가입자가 개별 여건에 따라 연금의 세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금을 인출할 때 세부담이 클 경우, 즉 운용수익과 더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축적된 연금자산을 인출(연간 1,200만원 초과)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을 선납하고 인출시 비과세되는 연금제도 선택이 유리할 수 있음.

◉ 둘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 및 지원하여,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100인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사용자 기여금의 최대 100%까지 5년간 환급하는 기업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6.3%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91.4%에 비해 크게 미진한 편인데, 이러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한 국	미 국
가입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다양화	•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TEE형 연금 방식 도입 등을 검토 필요	• 연금 납입시 소득공제 후 수령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EET형과 세금납부 후 연금 인출시 비과세하는 TEE형 등 이원화된 연금 방식을 운영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 촉진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업장(사용자)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100인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사용자 기여금의 최대 100%까지 5년간 환급, 지원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60]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2

투자와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